

건설정책저널 | 제21대 국회의 건설입법·정책과제

입법동향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입법동향

1. 건설산업기본법

(1) 법제처 입법예고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64호)

• 제안이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991호; 법률 제16136호; 법률 제17221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안 제31조의2 신설)

-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함.

㉺ 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안 제34조의5 제1항 신설)

-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함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및제8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㉞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안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 비고

- 법제처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59337&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lmNm&keyWord=건설산업기본법&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2020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정책과장)에게 의견제출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65호)

•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법률 제17221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㉞ 소규모 건설공사 제도 폐지(안 제13조의2 삭제)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를 폐지함.
- ㉞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안 제13조의3 신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전문공사 범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함

㉔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등 도입(안 제13조의4 신설)**

-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㉕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도 도입(안 제23조제10항 및 제24조 제1항제5호)**

- 법 제16조 건설사업자의 시공자격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와 하도급받은 공사(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포함)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 시공품질 제고와 시공책임 강화를 위한 수급인의 직접시공 활성화 촉진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직접시공 공시제도 도입

㉖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제도 도입(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보호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설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㉗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안 부칙 제7조)**

-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

(2) 제21대 국회 계류의안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김도읍	2100811 (2020. 06. 22)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함
윤관석	2100019 (2020. 06. 01.)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입법예고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06호, 2020. 7. 8. 시행)

• 개정이유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原事業者)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사유에서 제외하고, 면제사유 중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 합의기한을 하도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신·구 조문 대비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제〉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2) 제21대 국회 계류의안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박정	2100440 (2020. 06. 12.)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입법예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33호, 2020. 10. 01. 시행)

•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㉞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㉟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종전보다 5일씩 연장함(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제31조제2항 신설).

• 신·구 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78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33호, 2020. 3. 31., 일부개정]
〈신 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78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33호, 2020. 3. 31., 일부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조정) ① (생략)	제31조(심사·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심사·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10. 01. 시행)

• 개정이유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처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종전보다 5일씩 연장함(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제31조제2항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 라. (생략) 2. ~ 5.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② (생략) 〈신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생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생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2조(심사) ①·② (생략)	제112조(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심사·조정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